

I.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역목적

본 용역은 금년 도로관리 작업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 설계도서에 의거 금년 예산 범위 내 위탁처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나. 용역개요

- 용역위치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별도 부지
- 발 생 량 : 380ton

다. 용역기간

- 1) 본 용역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협의를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공사 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라. 설계변경조건 : 발주청의 승인 필요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시공측량 결과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현장 여건 상 시공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5) 물가 변동이 되었을 때
- 6)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등

Ⅱ. 용역 시 방 서

2. 용역시방서

가. 일반사항

1. 용역기간

- 1) 본 용역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협의를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공사 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설계변경조건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시공측량 결과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현장 여건 상 시공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5) 물가 변동이 되었을 때
- 6)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등

나. 적용범위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적용대상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청 또는 발주청으로부터 최초로 수급받는 자)
- 2)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3) 건설기술용역업자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3. 용어의 정의

3.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

3.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류·폐블럭류·폐타일류·폐기와·폐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 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3.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4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5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폼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성유류 (의류, 실, 끈 등)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지정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사업장일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전반, 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장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5.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1)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함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검토

- 발주청이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청이 신고
- 수급의 경우 발주청으로부터 최초로 수급자가 신고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청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회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 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회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 등)>, 공사연면적(㎡)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청과 수급자 및 하수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 (신축, 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 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반 :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 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5.2 건설현장관리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 구분해제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5.3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가.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1)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은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 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2)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4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과 관계서류 확인

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청 또는 수급자)가 작성
- 2) 발주청은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1) 반입일자,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다.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1)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1) 폐기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추가보고

6. 업무책임한계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근합는 작업(업무)지시서에 의한다.
- 자. 폐기물 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